

글로벌 설탕세 정책트렌드 분석 및 주요국 동향조사

□ 설탕세 정책 동향

- (설탕세 개념)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 또는 탄산음료세(Soda Tax)
 - 설탕을 함유한 음료 또는 음료의 설탕 함유량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
- (도입배경) 세수 증대와 국민건강이 목적
 - 설탕소비량, 비만을 증가로 설탕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시됨
 - 미국과 영국에서는 설탕세로 확보한 세수를 공공보건,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
- (주요국 동향) 대체로 설탕소비량이 높은 국가에서 설탕세 도입
 - 2017년 현재 설탕세 도입 국가는 미국, 멕시코, 프랑스 외 3개국과 5개 제도(諸島)
 - 영국과 태국은 설탕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은 도입 논의중

□ 주요 기 도입국

〈 주요 기 도입국 현황 〉

국가	도입시기	부과대상	과세기준	세율	인공감미료	
프랑스	2012	제조업체, 수입업체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무알콜 음료	1L당 0.075유로 (한화 약 95원)	포함	
멕시코	2014	소비자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무알콜 음료	1L당 1페소 (한화 약 63원)	미포함	
미국	버클리	2015	유통업체	설탕 함유 음료	1oz당 0.01 달러 (한화 약 11원)	포함
	필라델피아	2017	유통업체	설탕 함유 음료	1oz당 0.01 달러 (한화 약 11원)	포함
	오클랜드	2017	유통업체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무알콜 음료	1oz당 0.02 달러 (한화 약 22원)	포함
	블더	2017	유통업체	12oz당 설탕 5g 이상 함유 음료	1oz당 0.01 달러 (한화 약 11원)	포함
	쿡 카운티	2017	유통업체	설탕 함유 음료	1oz당 0.01 달러 (한화 약 11원)	포함

* 인공감미료: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아스파탐·소르비톨·수크랄로스 등이 해당

- (미국) 유통업체에 부과, 시별로 세율 상이하나 1oz당 0.01~0.02달러(한화 약 11~22원)
 - 2015년 버클리 시를 시작으로 설탕세를 시행중인 5개시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시, 시애틀 시에서 2018년 설탕세 도입예정
 - 업계에서는 설탕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연감미료를 사용하여 무설탕 제품 출시
- (멕시코) 소비자에 부과, 음료 1L당 1페소(한화 약 63원)
 -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설탕세를 시행하며, 유제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업체들은 무설탕 탄산음료와 주스를 출시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천연과즙만을 이용하여 만든 주스 브랜드 인기
- (프랑스)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부과, 음료 1L당 0.075유로(한화 약 95원)
 - 체중조절용 0칼로리 음료 및 유아용 유제품은 제외

- 단순히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설탕 또는 저설탕 음료를 출시하여 대응, 무설탕 유제품도 다양하게 출시

□ 주요 도입 예정국

< 주요 도입 예정국 현황 >

국가	도입예정시기	부과대상	과세기준	세율	인공감미료
영국	2018년 4월	제조업체, 수입업체	100ml 당 설탕함량 5~7g 탄산음료	1L당 18펜스 (한화 약 264원)	미포함
			100ml 당 설탕함량 8g 이상 탄산음료	1L당 24펜스 (한화 약 359원)	
태국	2017년 9월	소비자	설탕함량 10% 이상 음료	제품가격의 최대 20% (예상)	미포함

- **(영국)**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부과, 설탕 함량에 따라 1L당 18~24펜스(한화 약 264~359원)
 - 인공감미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천연과일주스 및 유음료도 설탕세 면제 품목
 - 업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제품 또는 과일주스와 같은 영양가 높은 음료 출시
- **(태국)** 소비자에 부과, 설탕함량에 따라 제품가격의 최대 20% 내(구체적인 사항 조율 중)
 - 과일 및 채소 함유량이 10% 이상인 음료, 우유 및 유음료는 면제
 - 설탕세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은 과채주스에서 과즙 함량을 높이거나,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 제품 출시로 대응

□ 주요 도입 논의국

< 주요 도입 논의국 현황 >

국가	도입논의시기	부과대상	과세기준	예상 세율	인공감미료
호주	2017년 말	미정	탄산음료	제품가격의 20%	미정
캐나다	2018~2019년	미정	설탕 함유 음료	미정	미정

- **(호주)** 부과대상 미정, 탄산음료 제품가격의 20% 예상
 -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100ml 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도 설탕세 부과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
 - 업계에서는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무설탕 제품을 출시하며 대응
- **(캐나다)** 부과대상 미정, 세율 미정
 - 2016년 캐나다 상원(Senate of Canada)은 설탕 및 인공감미료 함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설탕세 도입시기와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지만 음료업계는 무설탕 음료를 출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 국내현황

- **(음료시장현황)** 2015년 음료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4조 5,189억 원
 - 탄산음료 시장이 1조 6,162억 원으로 전체 음료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점유율 1위

- 과채주스 시장과 음료베이스 시장은 과일 착즙주스 및 기능성 건강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향후 시장 성장 예상

〈 국내 음료시장 규모(2011~2015) 〉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탄산음료	1,293,826	1,413,681	1,372,349	1,486,464	1,616,232
과채음료	448,444	480,628	437,318	446,158	386,306
과채주스	401,515	437,521	411,445	376,818	409,674
두유	360,321	404,512	324,944	319,237	309,728
혼합음료	839,405	949,051	802,267	865,550	948,097
음료베이스	176,909	153,207	128,441	207,990	222,540
기타	461,786	439,087	368,254	340,393	626,374
합계	3,982,206	4,277,687	3,845,018	4,042,610	4,518,951

* 출처: 통계청, 음료류 품목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 (설당소비현황) 국내 1인 1일당 설당소비량은 2013년 최고치인 65g을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
 -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5g의 2.4배 수준이지만 미국(126.4g), 호주(95.6g)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유지

〈 국내 1인 1일당 설당소비량(2011~2015) 〉

(단위: g)

	2011	2012	2013	2014	2015
설당소비량	62.2	61.3	65.0	64.7	61.3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식품수급표」

- (기준 및 규제) 설당세 도입 계획 전무
 - 일일 섭취량을 권장하는 것과 권장량 기준치 대비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규제사항 없음
 - 2016년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제 2016-149호」에서는 당류 일일 권장량을 100g으로 규정
 - 당류 표시 시 설당과 인공감미료를 구분하지 않고 ‘당류’로 통칭

□ 주요 국가별 규제사항 비교분석

- 국가별로 설당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각기 다르고, 인공감미료에도 설당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있어 서로 상이한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설당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

인공감미료 포함	인공감미료 미포함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예정), 태국(예정)
음료자체 부과	설당함량에 따른 부과
미국(볼더 시 제외), 프랑스, 멕시코	미국(볼더 시), 영국(예정), 태국(예정)

□ 시장진출 방안

○ (국내 시장분석) 무설탕 음료개발 활성화

- 최근 3년간 설탕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건강한 음료가 소비트렌드로 자리잡음
 - 과채착즙주스, 설탕과 인공감미료를 과즙농축액과 꿀로 대체한 음료베이스 제품, 기능성 차 음료 등 인기

○ (수출 시사점) 한국 음료제품의 해외진출 적기로, 주요국가의 규제정책 변화에 유의

- 해외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탄산음료 및 설탕 함유 음료에 설탕세가 부과되면서 해외 탄산음료 시장의 정체 예상
- 국내에서는 해외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무설탕 음료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며, 설탕세가 부과되면서 무설탕음료는 상대적 가격경쟁력 유리
- 당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함량에 따라 표시를 달리하는 등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설탕 관련 규제정책 주의

○ (시장진출 대응전략)

〈국가별 시장진출 대응전략〉

도입현황	국가	대응 전략
기 도입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시 또는 주 연방 차원에서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에 유의해야 함 · 미국의 설탕세는 제품이 아닌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제도로, 수출제품에 설탕이 함유된 경우 수입유통업체에서 수출업체 측에 세금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 · 2016년 개정된 미국의 식품 영양성분표 표시규정 등 설탕 관련 변경된 규정 숙지 필요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세부과로 가격이 상승하자 비탄산음료 소비 증가 추세로 과즙, 천연감미료 등을 사용한 제품 유망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설탕세는 설탕뿐만 아니라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도 과세 대상이므로 천연재료로 단맛을 낸 제품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
도입 예정국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설탕세는 탄산음료 중에서도 100ml당 설탕 5g 이상인 음료만 해당되며 함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탄산음료의 설탕 함량에 유의 · 인공 또는 천연감미료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변경을 통해 설탕세 부과 없이 진출이 가능 · 영국에서 성분의 함량에 따라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신호등 표시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탕함량을 낮추어 초록색으로 표시한다면 판매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9월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율 미정 · 현재 태국에서 설탕세 도입을 두고 찬반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도입 논의국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설탕세 법안이 2017년 말 발의예정이며 통과 여부는 미지수 · 탄산음료에 20%의 세율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필요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에서는 2018-2019년 내 설탕세 도입을 확정지을 것으로 검토 중이며, 과세대상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모든 당류를 묶어서 표시하되 세분화된 당의 종류를 나열하는 국내와 다른 설탕 표시방식에 유의